

- “요양 급부 등에 관한 사전 통지서”

요양 급부 등의 실시를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 시작 연월일부터 요양 급부 등을 시작하므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마이넘버카드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정 없이,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특별요양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